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주차 공간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적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,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한 주차장 바닥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주차장 설치시 주차장 바닥에 블록과 자갈 사용가능(안 제9조)
(기존,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→ 블록과 자갈 추가로 바닥기준 완화)

○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강화(안 제15조)

⑴ 주차장법 시행령 면적대비 90% 강화

· 위락시설 100㎡당 1대 → 90㎡당 1대

·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50㎡당 1대 → 135㎡당 1대

·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 200㎡당 1대 → 180㎡당 1대

·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

- 전용면적 85㎡ 이하 : 110㎡당 1대 → 95㎡당 1대

- 전용면적 85㎡ 초과 : 85㎡당 1대 → 75㎡당 1대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제19조 및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8.23. ~ 2018. 9.12.)

○ 규제심사 : 심사완료 〔기획감사실-4245(2018. 6. 8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28298(2018. 5.14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건축 시 설치해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허가조건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지금까지 부설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(아스콘)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해야 하나 이를 완화하여 이에 준하는 재료 및 자갈로 포장하면 되도록 하고, 부설 주차장의 기준 면적의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한 주차면적과 우리 지역의 주차난을 감안하여 기준을 다소 강화한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